



**한-터키 FTA 발효대비
관세행정 주요내용 설명회**

2013. 4. 19~29

관 세 청

목 차

I. 한-터키 FTA 주요내용

II. 13년 개정 시행된 FTA특례법령 주요내용

III. 원산지인증수출자 갱신 유의사항

IV. 관세청 중소기업 FTA지원사업 소개

I. 한-터키 FTA 주요내용



FTA의 개념

❖ FTA의 개념

- **[FTA 정의] Free Trade Agreement**는 양국 또는 지역간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여 자유무역을 실현하기 위한 협정으로,
- 특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협정**은 체결 상대국과 교역물품에 대한 특혜관세(**관세철폐 또는 인하**)을 주고 받는 협정

<자유무역협정 내용 및 범위>

얼마만큼 주고 받을 것인가?



관세철폐 스케줄

다른 나라와 어떻게 구별할까?



원산지 결정 기준

구별하는 절차는?



원산지 증명 규정 (통관절차)

전세계 FTA 체결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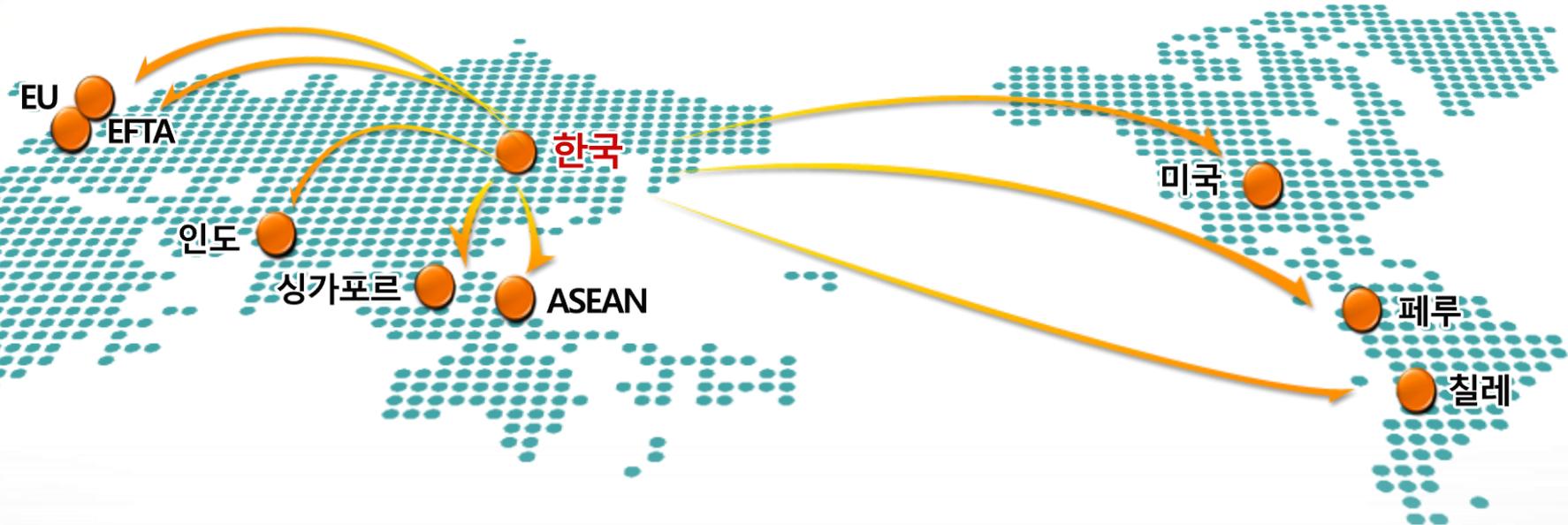
- ❖ WTO 다자간 무역협상인 DDA의 타결부진* 등의 영향으로 세계 각국은 지역주의에 기반한 합종연횡 전개
 - * 2002년 출범 이후 아직까지 未타결
- ❖ 세계 교역확대를 위한 패러다임이 다자(DDA) → 지역(FTA)체제로 전환되어 FTA 체결이 급속히 확산

< 전세계 FTA 발효 건수 >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 ❖ '94.4.1. 한-칠레 FTA 발효(우리나라 최초의 FTA)
- ❖ 동시다발적 협상 추진으로 총 8개 FTA(45개국)가 발효 중



구분	기발효 (45개국)	협상타결 (2개국)	협상중 (16개국)	검토중 (21개국)
체결국가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콜롬비아	중국, 베트남 등	일본, 러시아, Mercosur 등
교역비중(누적)	34%	34.7%	69.6%	83.8%

한-터키 FTA 상품 양허 내용

구 분	터키	한국
품목수 기준	89.8% 품목에 대해 관세 10년내 철폐	92.2% 품목에 대해 관세 10년내 철폐
수입액 기준	對 한국 수입 100%에 부과되는 관세를 10년내 철폐	對 터키 수입 99.6%에 부과되는 관세를 10년내 철폐

<한-터키 FTA 공산품 양허 유형별 주요 품목>

양허유형	한국 양허		터키 양허	
	주요 품목	품목수	주요 품목	품목수
즉시 철폐	공기조절기, 금속절삭가공기계, 냉장고, 모자, 아연광, 양탄자, 의료용기기, 광물성연료(나프타, 원유, 기타석유제품)	9,365	ABS합성수지, 기타플라스틱제품, 일부 평판압연제품, 기타알루미늄제품, 신변장식용품, 포트랜드시멘트, 합판, 섬유판, 파티클보드, 조립식목재건축물, 철도차량부품	7,389
3년 철폐	내시경, 농약, 밸브, 베어링, 변압기부품, 펌프, 계측기, 대리석	200	차량용 고무타이어, 공기조절기, 원동기와펌프, 볼트와 너트, 기타산업기계, 가열난방기	350
5년 철폐	조립식목재건축물, 제재목, 전동축, 알루미늄의 판·시트, 화강암, 가솔린경차, 가솔린/디젤 소형	233	기타자동차부품, 면사, 편직물, 일부합성필라멘트사, 합성필라멘트사직물, 냉장고, 전동기, 가솔린/디젤 중·대형	913
7년 비선형	-	-	가솔린/디젤 1600cc이하 소형승용차(4개세번)	4
7년 철폐	양모사, 섬유모사, 직물, 합판, 섬유판, 파티클보드(PB)	129	양모및섬수모혼방직물, 기어박스, 평판압연제품, 칼라 TV, 세탁기	835

한-터키 FTA 농수산물 양허 내용

양허유형	한국 양허		터키 양허	
	주요 품목	품목수	주요 품목	품목수
즉시 철폐	파스타, 토마토페이스트, 건포도, 토마토케찹, 조제식료품, 타임및월계수잎, 올리브유및그분, 핵물, 천일염, 밀(사료용)	194	인스턴트커피, 담배(완성품), 라면, 기타조제식료품, 소주, 김치, 간장, 된장, 맥주, 유아용조제식료품, 한천, 황다랑어 : 아국 수출품 포함	479
5년 철폐	초코렛(속을채운것), 올리브유(버진), 드롭프스, 레몬, 스파게티, 사탕수수, 인스턴트커피, 참다랑어	201	밀의글루텐, 인삼류, 선인장, 장미, 겨자씨, 개 및 고양이사료, 청어	62
7년 철폐	잼, 버터조제품, 무화과(신선/건조), 맥주, 식염, 헤즐너트	21	튤립, 글라디올러스, 밀크알부민, 고래류	34
10년	잎담배(오리엔트종), 밀가루, 코코아페이스트, 레몬주스, 옥수수유, 겨자유, 간장, 위스키, 와인, 해바라기씨조유, 포도주스, 멸치통조림, 파래, 김, 피스타치오	609	잎담배(황색종), 양배추, 오이, 감자, 콩, 고등어, 연어, 넙치, 참다랑어	801
RD (관세인하)	보조사료, 해삼, 멸치, 송어, 게, 굴, 홍합, 아귀, 가오리	134	요구르트, 추잉껌, 마가린, 설탕과자, 송어	175
E (현관세유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추, 마늘, 양파, 포도, 오렌지, 감귤, 갑오징어(냉동), 꿀, 넙치, 밤, 잣, 대추, 호두 : 아국 민감품목	599	혼합주스, 파인애플, 버찌, 살구	748
NS (보호조치가가능)	기타결련, 로얄제리, 아이스크림	180	닭고기, 유장, 치즈, 버	312
R(미양허)	쌀	16	-	0

협정적용 영역

[대한민국] 한국 주권하의 육지, 해양 및 상공, 그리고 한국이 국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의 외측한계선에 인접하고 그 한계 밖에 있는 해저 및 하부토양을 포함한 해양지역

[터키] 영토, 내수, 영해 및 그 상공, 그리고 국제법에 따라 생물이나 무생물 천연 자원의 탐사, 개발 및 보존을 목적으로 터키가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해양지역

〈수산물의 원산지결정〉

[연안국주의] 영해(EEZ)내에서 획득한 수산물의 원산지는 연안국

※ 한-페루 FTA의 경우 당사국 영역이라 하더라도 비당사국에 등록되고 그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한 획득물은 원산지 불인정

[기국주의] 공해에서 획득한 수산물의 원산지는 역내선박 여부(국기게양 포함)에 따라 결정

※ 한- EFTA FTA(등록x, 국기게양o), 한-터키/EU FTA(등록+국기게양+소유요건)

원산지 규정

[개요] 터키-EU간 관세동행 관계를 고려 한-EU FTA상의 특혜원산지규정을 기본으로 합의하되, 양측의 교역관계를 균형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일부품목에 대해 원산지기준을 완화하거나 예외 쿼터물량을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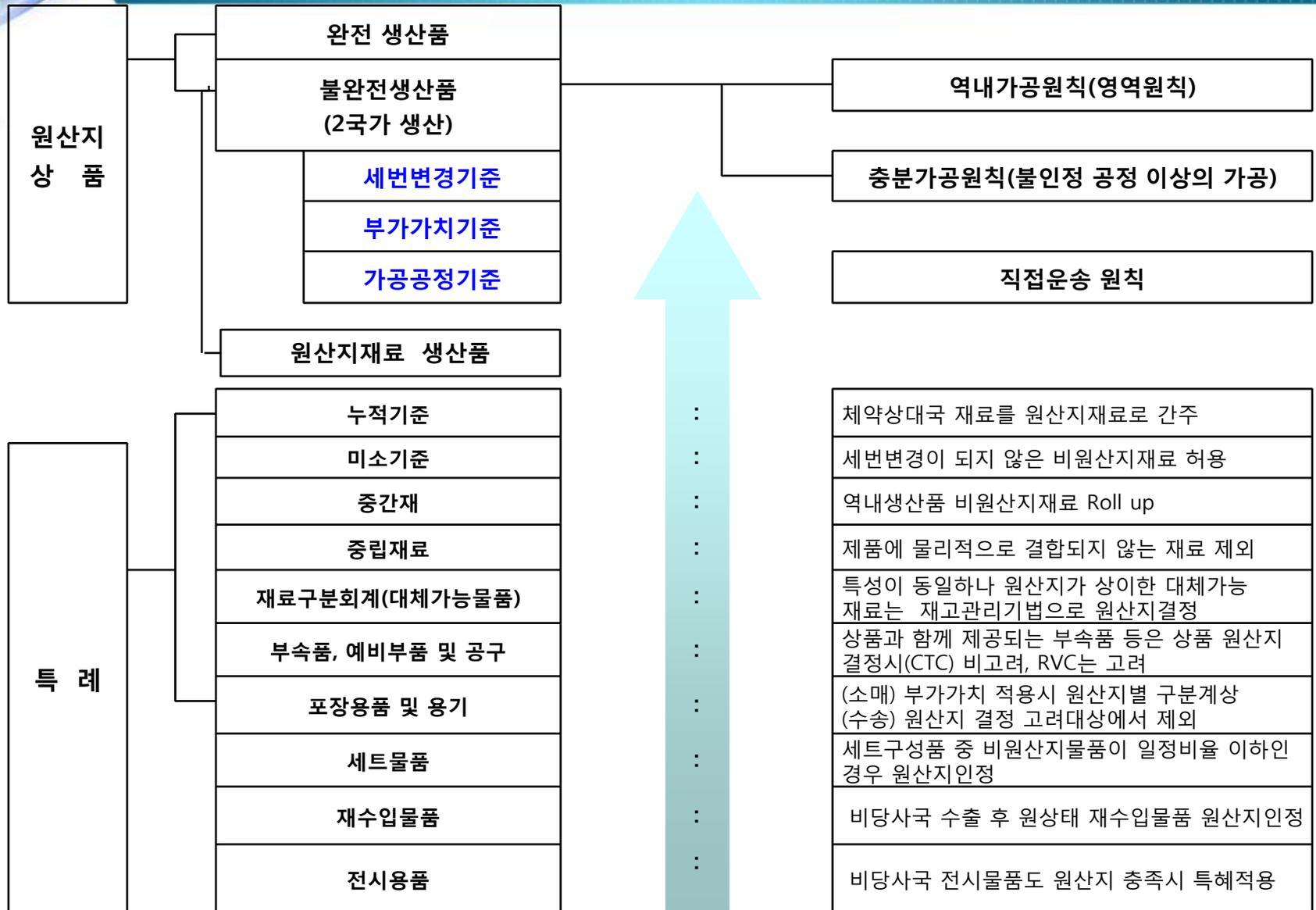
[원산지제품] 당사국에서 생산되고 협정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특혜대상물품

- 가. 당사국 내에서 완전히 획득된 제품
- 나. 당사국 내에서 완전히 획득되지 아니한 재료(비원산지재료)를 결합하여 그 당사국 내에서 획득된 제품. 다만, 해당 당사국내에서 충분한 작업/가공 필요하다.
- 다. 당사국 내에서 원산지제품으로 자격을 부여받은 재료로만 획득된 제품

[자격단위] HS의 상품분류코드

- 가. 물품의 집단 또는 집합으로 구성된 제품이 HS상에서 단일호로 분류되는 경우 그 전체가 자격 단위 구성
- 나. 탁송품이 HS의 동일한 호에 분류된 많은 동일한 제품으로 구성되는 경우 원산지규정의 적용은 각 제품별로 다루어져야 함

원산지상품 결정체계



품목별 원산지 규정

[주요 공산품] 세번변경기준 혹은 부가가치기준 선택적 규정

품 목	원산지 기준
자동차	- 완성차: 역외산 부품비율 45% 이하 - 자동차 부품: 역외산 부품비율 50%이하 또는 세번변경기준(CTH) - 모터사이클, 트레일러 등 기타자동차의 경우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외산 허용치 50%에 합의 - 철도차량은 세번변경기준, 자전거는 역외산 허용치 45%를 적용
기계, 전기·전자	- 세번변경기준(CTH)과 역외산 부품사용비율 45-50%중 선택
의 류	- 직물기준 ※ 직물기준 (Fabric Forward) : 한·미 FTA의 원사기준(Yarn-Forward) 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2단계의 공정을 거치면 된다는 의미에서 이중변형기준이라고도 함
화학제품	-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세번변경기준(CTH) 적용
비철금속	- 구리와 알루미늄의 일부품목을 제외하고 세번변경기준(CTH) 적용
신 발	-역외산 갑피(upper)와 안창 사용(inner sole)이 인정되나, 갑피가 안창에 부착된 채로 수입된 것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선택적으로 부가가치 기준 50%이하 기준 적용가능

[주요 농수산물] 완전생산 기준 적용

대상품목	원산지 기준
쌀·녹차·인삼·참기름 및 관련 제품	역내산 (완전생산기준)사용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역내에서 태어나고 자란 것(완전생산기준)
수 산 물	역내에서 어획된 것(완전생산기준)

품목별 원산지규정

[한-EU FTA보다 완화된 원산지기준 적용품목]

품목	HS	한-EU	한-터키
설탕과자	1704	모든 호(그 제품의 호 제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된 것. 다만,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17류에 해당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 미초과	모든 호(그 제품의 호 제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된 것
초콜릿 함유 식료품	1806	모든 호(그 제품의 호 제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된 것. 다만,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17류에 해당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 미초과	모든 호(그 제품의 호 제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된 것
기타 비스킷	1905.90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된 것 다만, 제11류의 것은 제외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된 것

품목별 원산지규정

(선착순으로 수출입하는 물품의 쿼타에 대해 완화된 원산지기준 적용품목)

HS	상품명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된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작업 등	연간 쿼터
5205	면사(면의 함유량이 85퍼센트인 것에 한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의 것은 제외한다)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또는 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로부터의 생산	200 메트릭톤
<p>상기 5205호의 제품이 연간 수출쿼타를 초과하는 경우 아래의 원산지기준이 적용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1. 생사 또는 견웨이스트(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에 한정한다) 2. 천연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3.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4. 제지 원료</p>			
5408	인조필라멘트사의 직물	인조필라멘트사로부터의 생산 또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이 동반되는 염색 작업. 다만, 염색되기 전 사용된 직물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200 메트릭톤
<p>상기 5408호의 제품이 연간 수출쿼타를 초과하는 경우 아래의 원산지기준이 적용된다. 1. 고무사를 넣은 경우 : 단사로부터 생산된 것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주석 6 참조 2. 고무사를 넣지 않은 경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가. 코이어사 나. 천연섬유 다.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라.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마. 종이 2. 날염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을 한 것. 다만, 날염되지 아니한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7.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p>			
5510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 및 소매용의 것은 제외한다)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또는 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로부터의 생산	200 메트릭톤
<p>상기 5510호의 제품이 연간 수출쿼타를 초과하는 경우 아래의 원산지기준이 적용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1. 생사 또는 견웨이스트(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에 한정한다) 2. 천연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3.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4. 제지</p>			

쿼타 물품의 FTA협정관세 적용 방법

[원산지신고] 수출자는 원산지신고서에 다음의 문구를 포함하여 작성

- Derogation – Annex II(a) of the Protocol on Rules of Origin and Origin Procedures

[운영방법] 아래와 같이 운영

1. (대상) 보세구역에 장치한 이후 수입신고되는 물품을 대상으로 운영
※ 수입신고시 세율구분코드 : FTR5
2. (통관절차)
 - 한도수량에 도달하는 날의 전날까지는 선착순으로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적용
 - 한도수량에 도달한 날에 수입신고된 물품은 잔여수량을 그날에 수입신고된 수량(수입신고수리된 수량에 한한다)에 비례하여 각각 배분
 - 배분한 이후에도 잔여수량이 있는 경우 한도수량도달일의 다음날 순서대로 배분
3. (배분에 따른 세액보정)
 - 통관지세관장 : 배분되어 조정된 수량을 수입자에게 통지
 - 수입자 : 관세법 제38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세액을 보정
※ 가산이자 없음(같은 조 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
4. (잔여수량의 게시) 배분절차가 완료되는 날까지 품목별 총수량·사용수량과 잔여수량을 관세청 FTA포탈(fta.customs.go.kr)을 통해 게시

비당사국 전시물품도 협정관세 적용대상

[개요]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시를 위하여 발송되고 전시 후에 어느 한쪽 당사국으로의 수입을 위하여 판매된 원산지 제품은 수입시 협정관세 적용 대상

[조건]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이 관세당국이 만족할 수 있도록 입증되어야 함

- 수출자가 그 제품을 어느 한쪽 당사국으로부터 전시회가 개최된 국가로 운송하고, 그 제품을 그 국가에서 전시한 사실
- 수출자가 어느 한쪽 당사국의 인에게 그 제품을 판매 또는 달리 처분한 사실
- 제품이 전시회 기간 중/ 전시회 직후에 전시를 위하여 발송된 상태로 운송된 사실
- 제품이 전시를 위하여 운송된 후 전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사실

☞ 한-아세안 FTA의 경우도 비당사국 전시물품에 대한 규정이 있음

직접운송 원칙

- **[직접운송 원칙]** 협정 양 당사국간 직접운송되는 제품에만 적용되나, 단일 탁송물을 구성하는 제품은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영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적으로 창고 보관되어 다른 영역을 통해 운송될 수 있음

[경유조건] 그 제품이 통과 또는 창고 보관되는 국가에서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반출되지 아니해야 하고, 하역, 재선적 또는 제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고안된 모든 공정 외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해야 함

탁송물'이란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제품이거나, 수출자로부터 수하인
으로의 선적에 대한 단일의 운송서류에 의하여, 또는 그러한 서류가 없는 경우 단일의
송장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제품을 말함

직접운송 원칙 (협정별 비교)

FTA	직접운송 원칙	제3국 허용작업	제한조건	제3국 세관통제 규정
싱가포르	있음(Direct Consignment)	하선, 재선적, 크레이팅, 포장, 재포장, 상품 보관 필요 작업	-	있음 (under customs control)
EFTA	있음(Direct Transport)	하선, 재선적, 탁송품의 분리, 상품 보관 필요 작업	-	있음 (under customs control)
아세안	있음(Direct Consignment)	하선, 재선적, 상품 보관 필요 작업	①지리적 혹은 운송 이유 ②제3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 금지	없음
인도	있음(Direct Consignment)	하선, 재선적, 상품 보관 필요 작업	제3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 금지	있음 (under customs control)
E U 터키	있음(Direct Transport)	하선, 재선적, 상품 보관 필요 작업	단일탁송화물만 가능	있음 (not released for free circulation)
페루	있음(Direct Transport)	하선, 재선적, 재포장, 상품 보관 필요 작업	제3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 금지	있음(under control of the customs authority)
칠레	없음 (Transshipment)	하선, 재선적, 크레이팅, 포장, 재포장, 상품 보관 필요 작업	-	있음(under the control or observation of the customs authority)
미국	없음 (Transit and Transshipment)	하선, 재선적, 상품 보관 /운송 필요 작업	-	있음(under control of the customs authority)

원산지증명 방식

[수출자 자율발급방식] 해당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수출자가 원산지 신고서 문안 작성 *원산지신고서의 작성주체는 한국/터키 소재 수출자만 가능*

FTA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터키	미국	페루
증명 방식	자율	기관	자율	기관	기관	자율		자율	기관(아세안방식) 자율(EU방식)
증명 주체	수출자	.싱:세관 .한:세관, 자유무역관리원, 상의	수출자 생산자	.아: 각국가별 기관 .한:세관, 상의 (개정:세관)	.인:수출 검사위원회 .한:세관, 상의 (개정:세관)	수출자 (인증 수출자)	수출자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페:통상본부 한:세관, 상의 인증수출자 2천불미만 수출자
증명 서식	양국간 통일증명	양국 각자 증명서식	송품장 신고 방식	통일증명서식(AK)	통일증명서식	송품장신고 방식		정형서식 없음	통일증명서식 송품장신고방식
유효 기간	2년	1년	1년	6개월 원칙 (수입이 유효기간 내 이루어진 경우 유효기간 경과분도 인정)	1년	1년		4년	1년 (비당사국 보관시 2년)
사용 언어	영어					영어 또는 수입 당사국 언어			영어
분할 사용	1회 사용원칙(분할가능) 다만, 한-미FTA의 경우 증명일로부터 12월 이내 포괄증명 가능								

원산지증명 방식

[유효기간] 수출당사국에서 발급된 날부터 12개월

[원산지신고서 면제] 사인 간 소포로 송부되는 물품과 여행자의 개인 수화물의 경우 아래의 금액 이하의 물품은 원산지신고서가 면제됨

- 터키로 수입되는 경우 : (소포) 500유로 / (여행자 개인수화물) 1,200유로
- 한국 수입의 경우 : 미화 1,000달러

※송품장이나 구매영수증 등에 표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미화 이외의 통화로 표시된 경우 관세법 제18조에 따른 과세환율로 환산한 금액

[제3국 송장] 무역거래 관행상 송품장이 비당사국에서 다시 발행되는 경우에도 원산지신고서는 수출당사국의 수출자가 작성하여야 함

[분해/미조립 물품] HS통칙 2(a)에 따른 HS제16, 17부, 제7308호 및 제9406호에 해당하는 분해/미조립된 제품이 분할 수입되는 경우 그 제품에 대한 단일 원산지신고서(첫번째 분할 수입시 세관에 제출)로 협정적용 가능

원산지신고서 사항

[신고서 문안]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① preferential origin.

.....^②

(Place and date)

.....^③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

①란 : '제품의 원산지를 작성 (예 : KR, KOREA, TR, TURKEY)

□ ②란 : '원산지신고서 작성장소와 작성일자'를 작성

※ 해당 서류에 장소와 일자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작성생략 가능

(해당서류에 장소와 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다른 경우에는 작성해야 함)

□ ③란 : '수출자의 서명과 신고서에 서명하는 인의 이름'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원산지신고서 사항

- **[신고서 작성관련 사항]** 신고서 문안을 영어로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작성,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 잉크를 사용 대문자로 작성
- 원산지신고서에는 수출자의 원본서명이 수기로 작성되어야 함
 - 원산지제품과 비원산지제품이 하나의 원산지신고서에 혼재된 경우에는 ‘제품의 원산지’ 표기란에는 원산지제품의 원산지를 표기, 비원산지 제품은 구분될 수 있도록 해당서류에 달리 명확하게 표기

- [원산지신고서 사본인정 여부]** 원산지신고서는 세관에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 현재 수입신고서 상업서류의 사본제출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사본을 제출 허용
- 세관 제출시 ‘특례고시’ 별표 6의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스탬프를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본 사본이 원본과 다를 경우 관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며, 세관에서 요구시 원본을 제출하겠습니다.
수입자 ○○○ 서명

- 수리후 협정관세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협정발효 적용시점

□**[적용시점]** 협정발효일 오전 0시 신고분 부터 적용

[경과규정] 협정발효일에 운송중에 있거나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입통관되지 않은
상태의 물품

- 발효일부터 12개월이내에 직접운송 입증서류, 소급하여 작성된 원산지신고서를
구비하여 협정관세 적용 신청 가능
 - ‘수리후 협정관세적용 신청기간’ 이 협정과 FTA특례법과 다름
 - [협 정] 협정발효일부터 12개월내에 협정관세적용을 신청해야 함
 - [특례법]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까지 협정관세적용을 신청해야 함
- (예) 보세구역반입일 2013.4.20일, 협정발효일 2013.5.1일, 수입신고수리일 2013.5.20일인
경우 : 2013.4.30까지 ‘수리 후 협정관세적용신청을 하고 세관에 증빙서류 제출

수입물품의 원산지결정 등에 관한 사전심사

- **[개요]**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원산지결정 등에 관한 사전심사를 요청할 수 있음

〈원산지 등 사전심사 대상업무〉

사전심사 대상	담당부서
당해물품 및 재료의 원산지에 관한 사항	관세평가분류원
당해물품 및 재료의 품목분류, 가격 또는 원가결정에 관한 사항	
당해물품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의 산정에 관한 사항	
관세환급, 납기연장에 관한 사항	관세청 세원심사과
관세감면의 적용여부	관세청 통관기획과
원산지국가 표시	관세청 특수통관과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사안	각 담당부서

원산지 검증방식

[자료보관] 수출자, 생산자 및 수입자는 원산지증명 및 협정관세 적용 관련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세관에서 동 자료요구시 제출하여야 함

[검증방식] 수출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수행하는 간접검증 방식

-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검증 요청일부터 10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거나, 그 회신이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제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 자격 부여를 거부할 수 있음

〈협정별 검증방식 비교〉

FTA	칠레	싱가포르	미국	아세안	인도	EFTA	EU	터키	페루
검증 방식	직접검증			원칙: 간접검증 예외: 직접검증		간접검증			간접 또는 직접검증
회신 기간	-		12월	6월	3월	10월			150일

HS2012 도입에 따른 적용

[자료보관] 제5차 HS협약 개정안에 따라 12.1.1일부터 HS2012가 시행되고 있으나 터키와의 FTA는 HS2007기준으로 협상타결

- HS2012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양국간 합의하기 전까지는 연계표 [HS2012 ↔ HS2007] 를 활용

* 연계표는 기 시달함('11.12.28)

[문서제목] HS 2012 도입에 따른 FTA 품목별 원산지기준(PSR) 운용 기준 알림

[문서번호] 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4818호

[적용방법]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수입신고서상의 HS품목번호 작성방법

서류명	품목번호 작성기준
협정관세적용신청서	HS2007
수출입신고서	HS2012

터키와의 FTA에 따른 관세율 구분부호

부 호	내 용
FTR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의 HSK에 1개의 협정세율 적용 물품 - 하나의 HSK내에 여러 개의 다른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물품 중 최고세율 물품
FTR2 FTR3 FTR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의 HSK내에 여러 개의 다른 협정세율중 최고세율적용물품을 제외한 次순위 세율 순으로 FTR2, FTR3, FTR4를 순차적으로 부여
FTR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착순방식을 적용하는 물품 중 수입쿼터 물량내의 물품 (원산지기준 완화 품목)

Ⅱ. 개정된 FTA특례법령 내용



원산지증빙서류 관련 사항

1. 원산지증빙서류 정의 명확화(법 제9조의2)

- ▶ 기존에는 “원산지증빙서류” 를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작성자, 기재사항, 유효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서류로 한정
- ☞ 금번 개정시에는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의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원산지증명서)와 그 밖의 원산지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정보 등으로 명확하게 구분
- ☞ 또한 기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원산지증명 발급기관, 발급방법, 유효기간 등 주요사항을 법으로 이관하여 법적 규범성을 강화

원산지증빙서류 관련 사항

2.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수료 부과(법 제9조의2-②, 규칙 제13조의2)

기 존	개 정
<input type="checkbox"/> FTA원산지증명서 발급수수료 ○ 세관발급 : 면제 ○ 상의발급 : 면제	<input type="checkbox"/> FTA원산지증명서 발급수수료 ○ 세관발급 : 면제 ○ 상의발급 : 건당 7,000원 ※시행일 : 2013.7.1

3. 원산지증명서 사후발급 신청시 제출서류 폐지(규칙 제6조- ②)

기 존	개 정
<input type="checkbox"/> 선적후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제출서류 - 사유서 - B/L사본 또는 수출물품 선적 사실 입증서류	- 제출 폐지 - 증명서발급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출생략

원산지증빙서류 관련 사항

4. 원산지확인서 사항(규칙 제6조의3-②, 제6조의4-②)

기 존	개 정
<input type="checkbox"/> 원산지포괄확인서/국내제조확인서 확인기간 - 작성일부터 12개월 <input type="checkbox"/> 소급작성시 포괄확인기간 기재	- 물품공급일부터 12개월 <input type="checkbox"/> 소급작성시 실제 물품공급일자 기재

5. 원산지자율증명 절차 사항(규칙 제8조)

기 존	개 정
<input type="checkbox"/> 원산지자율증명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를 근거로 발급 가능 ○ 수출자가 발급하는 경우에만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기재토록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확인서류를 근거로 발급할 수 있음 ○ 생산자와 수입자가 발급하는 경우에도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기재토록 추가

원산지증빙서류 관련 사항

5-2. 원산지증명서의 작성대장 기재항목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작성번호 및 작성일자	작성번호 및 작성일자	작성번호 및 작성일자
수출신고번호, 수리일자	수출신고번호, 수리일자 (생략 가능)	수입신고번호, 수리일자
품명·품목번호(6단위)·수량·금액 및 원산지	품명·품목번호(6단위)·수량·금액 및 원산지	품명·품목번호(6단위)·수량·금액 및 원산지
생산자 또는 공급자(생산자 또는 공 급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계약상대국의 수입자·수입국명	수출자 또는 물품을 공급받는 자	계약상대국의 수출자·수출국명
해당 물품에 적용된 협정의 명칭 및 원산지결정기준	해당 물품에 적용된 협정의 명칭 및 원산지결정기준	해당 물품에 적용된 협정의 명칭 및 원산지결정기준

6. 한-EU FTA 탁송화물 산정가격(규칙 제4조의3)

- ▶ EU와의 협정상 탁송화물의 총가격은 단일의 운송서류(송품장)에 의하여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물품을 기준으로 산정
- ☞ 금번 개정시에는 단일의 운송서류(송품장)에 의하여 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수하인에게 송부된 물품의 총가격(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동시에 송부된 물품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동시에 송부된 물품 가격의 합계) 기준으로 산정
- ⇒ 특정 수출자가 특정 수하인에게 하나의 운송수단으로 동시에 물건을 보내면서 다수의 운송서류로 나누어 수출함으로써 6천유로 이상 수출시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아야 하는 의무사항 회피를 방지하기 위함

협정관세 적용 사항

1. 일시수입물품 등 관세면제 대상 법률근거 정비 (법 제8조)

기 존	개 정
<p>제8조(일시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등) ① 계약상 대국에서 수입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원산지에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p> <p>1. 수입신고의 수리일(受理日)부터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시 수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협정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p> <p>2. 우리나라에서 일시적으로 수출한 후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협정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p> <p><신 설></p> <p>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p> <p>1.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경우. 다만,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다시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p>	<p>제8조(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 ① (현행과 같음) : 칠레·미국·페루와의 협정에서 적용</p> <p>1. (현행과 같음)</p> <p>2. 수리 또는 개조 등을 할 목적으로 계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다가 재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 수리·개조 이외 일시수출물품은 관세법에서 규정</p> <p>3. 소액의 상용견품(商用見品)·광고용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 협정규정내용 법률로 규정</p> <p>② (현행과 같음)</p> <p><삭 제> ☞ 제8조 제1항 2호 개정에 따른 삭제</p>

협정관세 적용 사항

2. 수리 후 협정관세적용 신청요건 명확화 (법 제10조)

기 존	개 정
<p>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u>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u>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p>	<p>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u>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u>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p>

3.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요구 면제대상 명확화(영 제10조)

- ▶ FTA원산지증명서 면제 대상은 각 협정별로 상이하나 국내법령에는 과세가격 미화 1천불 이하 물품으로 동일하게 규정
- ☞ 이번 개정시 원칙적으로 협정에서 정하는 규정을 따르되, 협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가격 미화 1천불 이하인 물품으로 규정

협정관세 적용 사항

4. 협정관세 적용보류 규정 명확화 (법 제17조, 영 제26조)

기 존	개 정
<p>□ 원산지 조사기간 중 협정관세 적용 보류</p> <p>○ 기간 : 원산지 조사일부터 결과 통지일 사이에 협정관세 적용 보류 가능</p> <p>○ 대상 : ①조사대상 수입자가 수입하는 ②조사대상 물품과 동종동질 물품</p>	<p>□ 협정관세 보류 조사범위 및 대상 물품 한정</p> <p>○ (좌동)</p> <p>※ 협정관세 보류요건(대상자)은 시행령에 반영하여 명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 불성실 혐의가 현저히 큰 경우 - 원산지 관련 허위증명 등 구체적인 제보가 있는 경우 - 기타 세관장이 원산지위반 혐의가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 <p>○ 대상 : ①조사대상 수입자가 ②조사대상 물품 수출자/생산자로부터 수입하는 ③조사대상 물품과 동종동질 물품</p>

인증수출자 관련사항

1. 업체별 인증수출자 인증기준 수정 (규칙 제7조-①-4)

기 존	개 정
<input type="checkbox"/> 업체별 인증수출자 인증기준 ○ 원산지 증명능력 ○ 원산지 관리전담자 운용 등 ○ 원산지조사 거부사실 無 ○ 서류보관의무 ○ 최근 2년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한 사실이 없는 자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최근 2년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하였거나 작성·발급한 사실이 없는 자

2. 인증수출자 인증사항 변경신고 수정 (규칙 제7조-⑤. 제7조의2-③)

기 존	개 정
<input type="checkbox"/> 인증사항 변경신고 대상 ○ 대표자 성명 ○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원산지관리전담자	○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규인증 대상 ○ <좌동> ○ <삭제> 신규인증 대상 ○ <좌동>

인증수출자 관련사항

3. 인증수출자 신청시 제출서류 간소화 (규칙 제7조의2-②)

기 존	개 정
<input type="checkbox"/> 인증신청시 제출서류 ○ 신청서 ○ 원산지확인서 ○ 원산지소명서	○ <좌동> ○ <좌동> ○ <좌동> 다만,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원산지를 확인한 물품을 공급받아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가능

4. 인증수출자 서식변경 및 재발급 제정 (규칙 제7조)

기 존	개 정
<input type="checkbox"/> 인증서 발급 시기 ○ 인증서 ○ (신설) <input type="checkbox"/> 인증서 서식(언어) ○ 한글 ○ (신설)	○ <좌동> ○ 분실 등 부득이한 경우 재발급 ○ <좌동> ○ 한/영 혼영

원산지검증 등 기타사항

1. 계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요청 [영 제14조]

기 존	개 정
<input type="checkbox"/> 계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확인 요청 ○ 수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원산지확인이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신설)	○ <좌동> ○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

2. 특혜관세 부과제척기간 [법 제16조 제2항]

기 존	개 정
<input type="checkbox"/> 특혜관세 부과제척기간 ○ 5년 ○ (신설)	○ <좌동> ○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계약 상대국으로부터 원산지조사 결과 회신 등이 있는 경우 관세법상 특별제척기간을 준용하여 과세기간을 연장 할 수 있도록 개정

Ⅲ. 원산지인증수출자 갱신 유의사항



원산지인증수출자 갱신 유의사항

1. 현 황

- ▶ 금년은 한-EU FTA발효 2년째로 인증 갱신대상과 원산지검증 급증

[갱신대상 건수] 13년 2,800여건, 14년 3,800여건

[EU검증 건수] 11년 41건, 12년 181건

- ☞ 특히, 품목별인증수출자의 경우 EU에 제도가 없어 아국 인증체계에 대한 불신으로 검증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

※ 품목별인증은 HS6단위로 인증되므로 상대국과 HS코드가 상이한 경우/인증서상 품목명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 등은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음

2. 갱신신청과 처리

- ▶ [갱신신청] 인증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인증유효기간 연장 신청

- ▶ 자율점검 실시결과 이상없는 것으로 세관장이 확인한 업체는 간이심사

* [자율점검] 인증수출자가 인증요건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인증일 기준으로 매 1년 마다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인증일이 속하는 달의 2개월전까지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 / 제출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세관장이 확인한 경우 인증갱신을 심사할 때 간이한 심사로 인증연장 가능

원산지인증수출자 갱신 유의사항

▶ [시정명령 또는 인증취소]

구분	업체별 인증수출자	품목별 인증수출자
시정명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시스템 또는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 · 원산지관리 전담자 지정·운영점수가 20점 미만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관리 전담자 지정·운영점수가 10점 미만인 경우
인증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벌이력이 있는 경우 · 시정명령 기간(30일 이상)이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 결정기준 불충족 · 시정명령 기간(30일 이상)이내에 시정 하지 않은 경우

3. 품목별 인증수출자를 업체별 인증수출자로 전환유도

▶ 우리나라의 인증수출자 신뢰도를 제고하여 상대국 검증리스크 감소

☞ EU 검증건의 대부분이 품목별 인증수출자임

▶ [장기적으로] 기존 품목별/업체별 인증수출자 제도 일원화 추진 중

품목별 인증수출자 전환 지원방안

▶ [요건비교]

구분	업체별 인증수출자	품목별 인증수출자
	· 수출(생산)물품의 원산지관리를 위한 전산 시스템 또는 업무매뉴얼 보유	· 수출(생산)물품이 수출국과의 FTA에 따른 원산지기준 충족(HS6단위)
원산지 전담자	· 원산지 증명능력을 갖춘 원산지관리 전담자(외부 전문가 포함)를 지정 운영하여야 함	
	☞ 교육점수 합이 20점 이상	☞ 교육점수 합이 10점 이상
서류보관	·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비치 관리	
법규준수	· 최근 2년간 원산지조사 미거부 · 최근 5년간 수출자 서류보관의무 미위반 · 최근 2년간 부정한 방법으로 C/O 미신청	· 없음

▶ [지원방안]

1. 시스템요건 : 무료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보급

☞ <http://www.ftapass.or.kr> / ☎ 031-600-0770(국제원산지정보원) / email : fta-pass@origin.or.kr

2. 원산지전담자 요건

- ☞ 사이버강의 (10점) : (관세청) fta.customs.go.kr / (산업부) ftahub.go.kr / (원산지정보원) origin.or.kr
- ☞ 원산지관리사 교육 (16점) / 원산지관리사 취득(요건 충족)
- ☞ FTA교육(시간당 2점) :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교육이수 ★서울세관 월2회 무료교육 제공 중
- ☞ FTA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 최근 2년간 건당 1점부여(최대 15점)
- ☞ 컨설팅 실적 : 건당 5점(최대 15점)

IV. 중소기업 FTA지원 사업



FTA 컨설팅 사업

[모집기간] 2013.3-6월(1차) / 하반기(2차)  **선착순으로 접수 마감하며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시행**
 [지원금액]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

구분	적용기준	기업부담	비고
I 기업군	전년 매출액 100억 이하	전액지원	
II기업군	전년 매출액 500억 이하	지원금액의10%	I 기업군제외
III기업군	전년 매출액 1,000억 이하	지원금액의20%	I, II기업군 제외
IV기업군	전년 매출액 1,000억 초과	지원금액의30%	

[지원대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소기업
 [컨설팅범위] 기업역량 수준에 따라 FTA-PASS 구축, 인증, 검증대비 사전진단

구분	주요 내용
원산지관리	BOM 작성부터 FTA-PASS 구축 및 활용 교육
인증수출자 지정	신규 인증 취득 및 인증 사후관리를 통한 갱신지원
원산지검증 대비	자료보관 실태 진단 및 Sample 제시 등의 모의검증 지원
C/O 등 발급	발급 안내부터 원산지확인서, C/O 발급 대행 지원(1개월)

[신청절차]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평택세관에 신청

기관명	부서명	전화번호	주소
서울본부세관	FTA 1과	02-510-1568	서울 강남구 언주로 218
부산경남지역본부세관	FTA과	051-620-6637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
인천경기지역본부세관	FTA과	032-452-3163	인천 중구 서해대로 339
대구경북지역본부세관	FTA과	053-230-5251	대구 달서구 화암로 301
광주전라지역본부세관	통관지원과	062-975-8051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208길43
평택직할세관	통관지원과	031-8054-7042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45

FTA-PASS와 ERP연계 지원사업 시범대상기업 모집

[사업개요]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자원관리시스템(ERP)와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자동 연계하는 표준형 범용모듈 개발 보급

[사업기간] 2013.6 - 10월

[지원내용] 무료 연계 지원(구축이후 FTA-PASS 항목변동분은 계속 무료 지원하나, 자체 ERP 변동분은 자체 해결)

[지원기업]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ERP를 사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선정기업 수] 시범업체 50체. 예비업체(10개)

[선정기준] 중소/중견기업 여부, 원산지확인서, 증명서 연간 발급실적 등을 고려 선정

[신청기간] 2013.3.28 - 4.25까지

[문의] 관세청 FTA집행과 042-481-3228, 국제원산지정보원 031-600-0724

Q & A





Thank you!



KCS

